

제 규정 개정

2020. 3.



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
제 규정 개정(안) 신 · 구 대조표

1. 인사규정

| 제 규정 변경 전 | 제 규정 변경 후 | 비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(임용) ①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장(이 "원장" 이라 한다)은 공개채용하여 이사장이 임면하되,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 제4조(임용) ①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장(이 "원장" 이라 한다)은 공개채용하여 이사장이 임면하되, <u>채용</u> <u>방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용하고</u> 이사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 2019년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에 따른 개정 |
| 제8조(면접위원) ①공개채용의 면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되,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며, 전형 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. | 제8조(면접위원) ①공개채용의 면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외부위원을 60%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되,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며, 전형 단계별로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. | 2019년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에 따른 개정 |
| 제18조(근로계약의 종료 등) ②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. 5. 운전면허 정지가 40일 이상인 경우 | 삭제 | 노·사 합의 |

| 제 규정 변경 전 | 제 규정 변경 후 | 비고 |
|---|---|--|
| 제27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| 제27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| 2019년 상반기 시 지도점검 |
| ①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·정직·감봉·견책· | ①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고· <u>강등</u> ·정직·감봉· | 지적에 따른 강등 신설 |
| 경고로 구분한다. | 견책·경고로 구분한다. | |
| ⑥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. | ⑥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 신분은 | |
| |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| |
| | 중 보수를 전액 감한다. | |
| | ⑦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. | ⑥항 신설에 따라 ⑦항으로 변 경 |
| THO 7 T / TI 7 H OF THO 1 THO 7 THO | 제37조(징계양정의 기준) | |
| 제37조(징계양정의 기준) | ①징계양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와 같고 단 , | 국민권익위원회 채용제도 개선 및 |
| 징계양정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와 같다. | 채용 비위자의 경우 별표 3을 참작하여야 한다. |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권고에 따른 개정 |
| 제38조(징계양정의 감경 및 가중) ①징계혐의자가 제24조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1단계 감경하여 의결 할 수 있다. | 제38조(징계양정의 감경 및 가중) ①징계혐의자가 제24조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양정을 1단계 감경하여 의결 할 수 있다. | |
| 다만,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감경 할 수 없다. | 다만, 부정청탁, 금품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 및 채용 비위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. | 국민권익위원회 채용제도 개선 및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권고에 따 른 개정 |
| 제43조(승무정지) 센터는 제규정 위반 및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15일 이내의 무급 승무 정지를 실시 할 수 있다. | 삭제 | 노·사 합의 |

| 제 규정 변경 전 | 제 규정 변경 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제 #경 현경 현 제51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 | 제 #경 현경 후 제51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 | <u>п</u> т |
| 지하조(공선 및 공급의 재연)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. 1. 경고, 견책 : 6개월(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) | 지하고(공선 및 공립의 제원)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. 1. 경고, 견책 : 6개월(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) | 2019년 상반기 시 지도점검 지 적에 따른 강등 신설로 인한 개정 |
| 2. 감봉 및 정직 : 1년 ③제1항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 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가산 한다. | 2. 감봉, 정직 및 <u>강등</u> : 1년 ③ <u>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</u> <u>각호의 기간(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</u> <u>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) 동안 승진을 제한 한다.</u> 1. 감봉, 정직 및 강등 : 15개월 | 국민권익위원회 채용제도 개선 및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권고에 따른 개정 |
| | 2. 경고, 견책: 9개월 ④제1항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한 기간은 당해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. | ③항 신설에 따라 ④항으로 변 경 |
| | 제53조(보직의 제한) ①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 하게 할 수 없다. 1. 정직 이상 3년 2. 정직 미만 2년 | 국민권익위원회 채용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신설 |
| | | |

[변경 전] [별표 2] (2016. 10.13 개정)

징계양정기준(제37조 관련)

|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| 고 고의 중과실이 | 고 중과실이거나, |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, 도가 경하고 중과 실인 경우 | 경과실인 경우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|
| 1. 성실의무 위반 | | | | |
| 가.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| 해 고 | 해고 - 정직 | 정직 -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나. 기 타 | 해 고 |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2. 복종의무 위반 | 해 고 | 정직 | 정직 -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3. 직장이탈 금지 위반 | 해 고 |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4. 친절 공정의무 위반 | 해 고 |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5. 비밀엄수 의무 위반 | 해 고 | 해고 - 정직 | 정직 -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6. 청렴의무 위반 | 해 고 | 해고 - 정직 | 정직 -감봉 | 견책 - 경고 |
| 7. 품위유지의무 위반 | 해 고 |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8.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| 해 고 |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9. 제18조 제규정 준수의무 위반 | 해 고 | 해 고 | 정 직 | 감 봉 |

[변경 후] [별표 2]

징계양정기준(제37조 관련)

|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| | 고 중과실이거나, 도가 경하고 고의 |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, 도가 경하고 중과 실인 경우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
| 1. 성실의무 위반 | | | | |
| 가.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| 해 고 | 해고 - 강등 | 정직 -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나. 부정청탁 및 금품 향응 수수 등에 따른 직무 수행 | | 해고 - 강등 | 정직 -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다. 기 타 | 해 고 | 강등 -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2. 복종의무 위반 | 해 고 | 강등 - 정직 | 정직 -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3. 직장이탈 금지 위반 | 해 고 | 강등 -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4. 친절 공정의무 위반 | 해 고 | 강등 -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5. 비밀엄수 의무 위반 | 해 고 | 해고 - 강등 | 정직 -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6. 청렴의무 위반 | 해고 | 해고 - 강등 | 정직 -감봉 | 견책 - 경고 |
| 7. 품위유지의무 위반 | 해 고 | 강등 -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8.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| 해 고 | 강등 - 정직 | 감봉 | 견책 - 경고 |
| 9. 제18조 제규정 준수의무 위반 | 해고 | 해고 - 강등 | 정 직 | 감 봉 |

- ※ 2019년 상반기 시 지도점검 지적에 따른 강등 신설
- ※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권고에 따른 비위유형(부정청탁 및 금품 향응 수수) 개정

[신설] [별표 3]

채용 비위자 징계기준(제37조 관련)

| 구 분 비위유형 | 관련자가 채용도 | 지 않은 경우 |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경과실 | 고의·중과실 | |
| 응시·자격 요건 미확인 ¹⁾ | 주의·경고 | 경징계 | 중징계 |
| | 경과실 | 고의·중과실 | |
|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| 주의·경고 | 경징계, 중징계 | 중징계 |
| 채용공고 후 응시·자격 요건 임의(변경절차 미이행)변경 | 경징계 | | 중징계 |
| | 절차 미준수 | 주요절차 ³⁾ 미준수 | |
| 채용절차 ²⁾ 미준수 | 경징계 | 중징계 | 중징계 |

| 구 분 비위유형 | 경과실 | 고의·중과실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| 경징계 | 중징계 |
| 임용 전 결격사유 미확인4) | 경징계 | 중징계 |

| 구 분 비위유형 | 경과실 | 고의·중과실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
| 최초 채용 부정채용5) | 중경 | 당계 |
|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| 경징계 | 중징계 |
|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| 경징계 | 중징계 |
|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이의 부적정 | 경징계 | 중징계 |

¹⁾ 응시ㆍ자격요건 미확인 : 학위ㆍ자격증ㆍ경력ㆍ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

²⁾ 관계 법령, 상위 지침,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

³⁾ 채용공고, 서류·면접 전형위원 구성, 위원의 제척·회피 규정의 준수,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

⁴⁾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(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)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

⁵⁾ 재직자/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) 특혜, 부정청탁,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

⁶⁾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, 성과평가 등의 부 적정 포함

2. 복무규정

| | 제 규정 변경 전 | | | 제 규정 변경 후 |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|
| [별표 1 |] 경조사별 휴가일수 | | [별표 1] | 경조사별 휴가일수 | | |
| 구분 | 대 상 | 일수 | 구분 | 대 상 | 일수 | |
| | 뵌 | 5 | | 본 인 | 5 | |
| 결혼 | 자 녀 | 1 | 결혼 | 자 녀 | 1 |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 |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 | |
| 출산 | 배 우 자 | 10 | 출산 | 배 우 자 | 10 | |
|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 |
|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 |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 | |
| 사망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| 1 | 사망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| 3 | 단체협약에 따른 개정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| 3 | |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| 1 |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| 3 |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| 3 | |
| 입양 | 본인 | 20 | 입양 | 본인 | 20 | |
| | | | | | | |

3. 여비규정

| 제 규정 변경 전 | 제 규정 변경 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9조(근무지내 출장) | 제9조(근무지내 출장) | 2019년 상반기 시 지 |
|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|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| 도점검 지적에 따른 |
| 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, 4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| 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, 4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| 개정 |
|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의 경우 | 1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직원의 경우 | |
| 5,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. | <u>50%를</u> 감액하여 지급한다. | |
| | | |

4. 업무용차량 관리규정

| 제 규정 변경 전 | 제 규정 변경 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적용범위) | 제2조(적용범위) | 2019년 공공기관 통합매뉴얼에 |
| ①이 규정에서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센터의 명의로 | ①이 규정에서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센터의 명의로 | 따른 개정 |
| 등록된 일체의 차량과 센터와 사용계약 체결에 의한 | 등록된 일체의 차량과 센터와 사용계약 체결에 의한 | |
| 임대 및 징비차량을 말한다. | 임대 및 징비차량을 말한다. | |
| ②이 규정에서 차량운전자라 함은 센터 소속 운전 | ②이 규정에서 차량운전자라 함은 센터 소속 운전 | |
| 직원과 그 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 업무차량을 | 직원과 그 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 업무차량을 | |
|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. |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. | |
| 1. "차량정수"라 함은 차량을 차종, 차형별로 구분하고 | 1. "차량정수"라 함은 차량을 차종, 차형별로 구분하고 | |
|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. |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하며 <u>적정대수는</u> | |
| | 2대 이하로 한다. | |